

전주지방법원 2016. 4. 26 선고 2015가단2255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주식회사 토지산업개발

변론 종결2016. 4. 19.

판결 선고2016. 4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2014. 7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,0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.

판사임경옥

별지